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1358 호 2022. 8. 25.(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98호[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씨 사이드 복합휴양지구)(변경) 고시]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99호[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00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2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02호[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 29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136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137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143호[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계획 재공고] …… 5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158호[도시관리계획(율동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6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159호[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 공고] 7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163호[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8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164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167호[행정대집행 영장] …… 10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168호[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08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98호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씨 사이드 복합휴양지구)(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4-280호(2014.12.24.), 제2015-43호(2015.3.5.), 울산 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229호(2015.11.4.), 제2017-20호(2017.1.25.), 제2017-234호(2017.11.30.),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295호(2018.12.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05호(2019.5.2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206호(2019.10.2.),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77호(2020.3.1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66호(2020.4.2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05호(2021.8.5.)로 강동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씨 사이드 복합휴양지구)을 변경하며,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을 의제 처리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Ⅰ. 관광단지 지정(변경) 개요

1. 관광단지명 : 강동관광단지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무룡동・정자동 일원
3. 지 정 면 적 : 1,367,240㎡(변경없음)
4. 사 업 기 간 : 2013년~2023년(변경없음)
5. 사 업 내 용(변경없음)
   - 공공 :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울산안전체험관, 키즈오토파크 등

- 민자 : 씨사이드 복합휴양지구, 리조트, 콘도, 호텔, 스포츠콤플렉스, 청소년수련시설 등

6. 조성계획 변경 사유

- 강동관광단지 씨사이드 복합휴양지구 내 시설계획 변경을 반영한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Ⅱ. 관광단지 조정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현황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시설명	부지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구성비 (%)	
총 계	1,367,240	142,281.90	793,190.40	100.00	1,367,240	143,204.53	792,321.10	100.00	-	922.63	-869.30	-	
공공편익시설	134,959	1,140.00	1,220.00	9.87	134,181	1,140.00	1,220.00	9.81	-778	-	-	-0.06	변경
숙박시설	165,943	57,196.27	546,958.70	12.13	168,742	58,516.59	545,887.23	12.34	2,799	1,320.32	-1,071.47	0.21	변경
상가시설	44,394	12,660.97	30,012.86	3.25	43,675	15,125.82	30,063.41	3.19	-719	2,464.85	50.55	-0.06	변경
휴양문화시설	98,784	11,432.94	41,449.10	7.23	98,982	11,386.30	41,460.97	7.24	198	-46.64	11.87	0.01	변경
운동오락시설	147,793	59,851.72	173,549.74	10.81	147,780	57,035.82	173,689.49	10.82	-13	-2,815.90	139.75	0.01	변경
녹지	775,367	-	-	56.71	773,880	-	-	56.60	-1,487	-	-	-0.11	변경

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관광단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세부시설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부지면적 (㎡)	구성비 (%)	바닥 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구성비 (%)	바닥 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구성비 (%)	바닥 면적 (㎡)	연면적 (㎡)	
총 계		1,367,240	100.00%	142,281.90	793,190.40	1,367,240	100.00%	143,204.53	792,321.10	-	-	922.63	-869.30	
공공 편익 시설	**소계**	134,959	9.87%	1,140	1,220	134,181	9.81%	1,140	1,220	-778	-0.06	-	-	
	도로	96,575	7.06%	-	-	95,643	6.99%	-	-	-932	-0.07	-	-	
	산책로	10,891	0.80%	-	-	10,891	0.80%	-	-	-	-	-	-	
	주차장	18,080	1.32%	-	-	18,234	1.33%	-	-	154	0.01	-	-	
	광장	6,528	0.48%	900	900	6,528	0.48%	900	900	-	-	-	-	
	공중화장실1	287	0.02%	60	60	287	0.02%	60	60	-	-	-	-	테마파크지구
	공중화장실2	161	0.01%	60	60	161	0.01%	60	60	-	-	-	-	테마파크지구
	관리사무소1	1,349	0.10%	50	130	1,349	0.10%	50	130	-	-	-	-	연수여가지구
	관리사무소2	1,088	0.08%	70	70	1,088	0.08%	70	70	-	-	-	-	건강휴양지구

구분	세부시설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숙박시설	**소계**	**165,943**	**12.13%**	**57,196.27**	**546,958.70**	**168,742**	**12.34%**	**58,516.59**	**545,887.23**	**2,799**	**0.21**	**1,320.32**	**-1,071.47**	
	타워형콘도1	14,696	1.07%	2,880	98,944	14,696	1.07%	2,880	98,944	-	-	-	-	청소년수련지구
	타워형콘도2	7,033	0.51%	2,115	34,913	7,033	0.51%	2,115	34,913	-	-	-	-	허브테마지구
	타워형콘도3(스파)	14,400	1.05%	3,487	43,092	14,400	1.05%	3,487	43,092	-	-	-	-	허브테마지구
	타워형콘도4	6,140	0.45%	2,115	31,886	6,140	0.45%	2,115	31,886	-	-	-	-	허브테마지구
	콘도1	3,807	0.28%	1,000	1,950	3,807	0.28%	1,000	1,950	-	-	-	-	복합스포츠지구
	콘도2	4,736	0.35%	1,500	4,400	4,736	0.35%	1,500	4,400	-	-	-	-	복합스포츠지구
	콘도3	3,424	0.25%	1,500	4,000	3,424	0.25%	1,500	4,000	-	-	-	-	건강휴양지구
	테라스형콘도1	4,630	0.34%	1,626	4,382	4,630	0.34%	1,626	4,328	-	-	-	-	허브테마지구
	테라스형콘도2	4,495	0.33%	1,626	4,382	4,495	0.33%	1,626	4,382	-	-	-	-	허브테마지구
	테라스형콘도3	6,118	0.45%	1,626	4,382	6,118	0.45%	1,626	4,382	-	-	-	-	허브테마지구
	빌라형콘도1	7,905	0.58%	2,215	7,304	7,905	0.58%	2,215	7,304	-	-	-	-	허브테마지구
	빌라형콘도2	7,165	0.52%	2,215	7,304	7,165	0.52%	2,215	7,304	-	-	-	-	허브테마지구
	호텔1(타워형콘도 및 호텔)	16,565	1.21%	14,471	79,656	16,565	1.21%	14,471	79,656	-	-	-	-	타워콘도지구
	호텔2	5,307	0.39%	1,100	18,000	5,307	0.39%	1,100	18,000	-	-	-	-	테마파크지구
	생활형숙박시설	**25,844**	**1.89%**	**5,768.20**	**77,238.35**	**26,679**	**1.95%**	**7,037.87**	**76,138.39**	**835**	**0.06**	**1,269.67**	**-1,099.96**	**씨사이드복합휴양지구**
	휴양콘도미니엄	**18,056**	**1.32%**	**7,524.07**	**29,997.35**	**20,020**	**1.47%**	**7,574.72**	**30,025.84**	**1,964**	**0.15**	**50.65**	**28.49**	**씨사이드복합휴양지구**
	MICE복합센터	9,840	0.72%	3,500	93,500	9,840	0.72%	3,500	93,500	-	-	-	-	연수여가지구
	단독형콘도	5,782	0.42%	928	1,628	5,782	0.42%	928	1,628	-	-	-	-	허브테마지구
상가시설	**소계**	**44,394**	**3.25%**	**12,660.97**	**30,012.86**	**43,675**	**3.19%**	**15,125.82**	**30,063.41**	**-719**	**-0.06**	**2,464.85**	**50.55**	
	푸드센터(일반음식점)	3,833	0.28%	1,500	5,500	3,833	0.28%	1,500	5,500	-	-	-	-	복합스포츠지구
	매점1(상가)	962	0.07%	800	2,000	962	0.07%	800	2,000	-	-	-	-	복합스포츠지구
	매점2(토이샵)	3,921	0.29%	1,600	4,800	3,921	0.29%	1,600	4,800	-	-	-	-	테마파크지구
	종합위락센터(휴게음식점)	5,873	0.43%	1,800	6,000	5,873	0.43%	1,800	6,000	-	-	-	-	복합스포츠지구
	판매시설	**8,729**	**0.64%**	**1,220.97**	**1,132.86**	**8,010**	**0.58%**	**3,685.82**	**1,183.41**	**-719**	**-0.06**	**2,464.85**	**50.55**	**씨사이드복합휴양지구**
	전망카페	656	0.05%	300	300	656	0.05%	300	300	-	-	-	-	테마파크지구

구분	세부시설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상가시설	휴게음식점1	2,598	0.19%	1,200	2,400	2,598	0.19%	1,200	2,400	-	-	-	-	테마파크지구
	휴게음식점2	2,472	0.18%	1,500	3,000	2,472	0.18%	1,500	3,000	-	-	-	-	테마파크지구
	휴게음식점3	9,682	0.71%	1,000	2,000	9,682	0.71%	1,000	2,000	-	-	-	-	테마파크지구
	휴게음식점4	1,969	0.14%	500	900	1,969	0.14%	500	900	-	-	-	-	연수여가지구
	전망휴게소(일반음식점)	959	0.07%	240	480	959	0.07%	240	480	-	-	-	-	테마파크지구
	야외카페테리아	2,740	0.20%	1,000	1,500	2,740	0.20%	1,000	1,500	-	-	-	-	건강휴양지구
휴양문화시설	**소계**	**98,784**	**7.23%**	**11,432.94**	**41,449.10**	**98,982**	**7.24%**	**11,386.30**	**41,460.97**	**198**	**0.01**	**-46.64**	**11.87**	**기정 구성비 합계 오기정정**
	청소년수련시설(영어체험마을)1	4,753	0.35%	1,596	4,619	4,753	0.35%	1,596	4,619	-	-	-	-	청소년수련지구
	청소년수련시설(영어체험마을)2	9,358	0.69%	4,018	28,680	9,358	0.69%	4,018	28,680	-	-	-	-	청소년수련지구
	청소년수련시설(영어체험마을)3	4,075	0.30%	259	1,298	4,075	0.30%	259	1,298	-	-	-	-	청소년수련지구
	야유회장	6,100	0.45%	-	-	6,100	0.45%			-	-	-	-	복합스포츠지구
	놀이동산(토이랜드)3	7,808	0.57%	689	689	7,808	0.57%	689	689	-	-	-	-	타워콘도지구
	글램핑장	**10,074**	**0.74%**	**370.94**	**263.10**	**10,272**	**0.74%**	**324.3**	**274.97**	**198**	**-**	**-46.64**	**11.87**	**싸이드 복합휴양지구**
	놀이동산(토이랜드)1	930	0.07%	500	500	930	0.07%	500	500	-	-	-	-	테마파크지구
	놀이동산(토이랜드)2	8,655	0.63%	500	500	8,655	0.63%	500	500	-	-	-	-	테마파크지구
	휴게소1	103	0.01%	-	-	103	0.01%	-	-	-	-	-	-	테마파크지구
	휴게소2	201	0.01%	-	-	201	0.01%	-	-	-	-	-	-	테마파크지구
	휴게소3	2,423	0.18%	-	-	2,423	0.18%	-	-	-	-	-	-	테마파크지구
	휴게소4	150	0.01%	-	-	150	0.01%	-	-	-	-	-	-	테마파크지구
	휴게소5	200	0.01%	-	-	200	0.01%	-	-	-	-	-	-	테마파크지구
	휴게소6	150	0.01%	-	-	150	0.01%	-	-	-	-	-	-	테마파크지구
	휴게소7	150	0.01%	-	-	150	0.01%	-	-	-	-	-	-	테마파크지구
	휴게소9	102	0.01%	-	-	102	0.01%	-	-	-	-	-	-	연수여가지구
	휴게소10	104	0.01%	-	-	104	0.01%	-	-	-	-	-	-	연수여가지구
	휴게소11	107	0.01%	-	-	107	0.01%	-	-	-	-	-	-	연수여가지구
	휴게소12	98	0.01%	-	-	98	0.01%	-	-	-	-	-	-	연수여가지구
	휴게소13	379	0.03%	-	-	379	0.03%	-	-	-	-	-	-	연수여가지구
	휴게소14	92	0.01%	-	-	92	0.01%	-	-	-	-	-	-	건강휴양지구
	휴게소15	105	0.01%	-	-	105	0.01%	-	-	-	-	-	-	건강휴양지구

구분	세부시설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문화시설	휴게소16	314	0.02%	-	-	314	0.02%	-	-	-	-	-	-	건강휴양지구
	휴게소17	307	0.02%	-	-	307	0.02%	-	-	-	-	-	-	건강휴양지구
	직장인 아트센터/여가창조관	12,639	0.92%	1,500	1,500	12,639	0.92%	1,500	1,500	-	-	-	-	연수여가지구
	향기정원	1,728	0.13%	-	-	1,728	0.13%	-	-	-	-	-	-	연수여가지구
	힐링센터	12,374	0.90%	2,000	3,400	12,374	0.90%	2,000	3,400	-	-	-	-	건강휴양지구
	허브가든1	422	0.03%	-	-	422	0.03%	-	-	-	-	-	-	허브테마지구
	허브가든2	531	0.04%	-	-	531	0.04%	-	-	-	-	-	-	허브테마지구
	허브가든3	425	0.03%	-	-	425	0.03%	-	-	-	-	-	-	허브테마지구
	허브가든4	425	0.03%	-	-	425	0.03%	-	-	-	-	-	-	허브테마지구
	조각공원	13,502	0.99%	-	-	13,502	0.99%	-	-	-	-	-	-	허브테마지구
운동오락시설	**소계**	**147,793**	**10.81%**	**59,851.72**	**173,549.74**	**147,780**	**10.82%**	**57,035.82**	**173,689.49**	**-13**	**0.01**	**-2,815.90**	**139.75**	**기정 구성비 합계 오기정정**
	모험놀이동산	6,937	0.51%	-	-	6,937	0.51%	-	-	-	-	-	-	청소년수련지구
	체육관	5,121	0.37%	2,792	2,792	5,121	0.37%	2,792	2,792	-	-	-	-	청소년수련지구
	스포츠 컴플렉스	43,290	3.16%	33,800	82,621	43,290	3.16%	33,800	82,621	-	-	-	-	복합스포츠지구
	스파	**19,261**	**1.41%**	**4,505.72**	**306.74**	**19,248**	**1.40%**	**1,689.82**	**446.49**	**-13**	**-0.01**	**-2,815.90**	**139.75**	**싸이트 복합 휴양지구**
	울산안전체험관	30,892	2.26%	8,000	55,400	30,892	2.26%	8,000	55,400	-	-	-	-	테마파크지구
	영상모험관	3,498	0.26%	750	2,250	3,498	0.26%	750	2,250	-	-	-	-	테마파크지구
	환상의집	7,317	0.54%	4,000	20,000	7,317	0.54%	4,000	20,000	-	-	-	-	테마파크지구
	잔디썰매장	4,360	0.32%	-	-	4,360	0.32%	-	-	-	-	-	-	테마파크지구
	키즈오토파크	7,428	0.54%	1,166	1,142	7,428	0.54%	1,666	1,142	-	-	-	-	테마파크지구
	번지점프대	1,635	0.12%	-	-	1,635	0.12%	-	-	-	-	-	-	테마파크지구
	체력단련코스1	88	0.01%	-	-	88	0.01%	-	-	-	-	-	-	테마파크지구
	체력단련코스2	78	0.01%	-	-	78	0.01%	-	-	-	-	-	-	테마파크지구
	체력단련코스3	90	0.01%	-	-	90	0.01%	-	-	-	-	-	-	테마파크지구
	체력단련코스4	100	0.01%	-	-	100	0.01%	-	-	-	-	-	-	테마파크지구
	체력단련코스5	100	0.01%	-	-	100	0.01%	-	-	-	-	-	-	테마파크지구
	체력단련코스6	100	0.01%	-	-	100	0.01%	-	-	-	-	-	-	테마파크지구
	승마힐링센터(승마체험장및마사)	7,305	0.53%	4,200	8,400	7,305	0.53%	4,200	8,400	-	-	-	-	연수여가지구
	워터파크	10,193	0.75%	638	638	10,193	0.75%	638	638	-	-	-	-	타워콘도지구
녹지	**소계**	**775,367**	**56.71%**	**-**	**-**	**773,880**	**56.60%**	**-**	**-**	**-1,487**	**-0.11**	**-**	**-**	
	녹지	**775,367**	**56.71%**	**-**	**-**	**773,880**	**56.60%**	**-**	**-**	**-1,487**	**-0.11**	**-**	**-**	

3. 지구별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 관광단지 지구별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시설지구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367,240	142,281.90	793,190.40	1,367,240	143,204.53	792,321.10	0	922.63	-869.30	
청소년수련지구	계			130,564	11,545	136,333	130,564	11,545	136,333	-	-	-	
	운동오락시설	소 계		12,058	2,792	2,792	12,058	2,792	2,792	-	-	-	
		1-12	모험놀이동산	6,937	-	-	6,937	-	-	-	-	-	
		2-20	체육관	5,121	2,792	2,792	5,121	2,792	2,792	-	-	-	
	휴양문화시설	소 계		18,186	5,873	34,597	18,186	5,873	34,597	-	-	-	
		3-1	청소년수련시설(영어체험마을)1	4,753	1,596	4,619	4,753	1,596	4,619	-	-	-	
		3-2	청소년수련시설(영어체험마을)2	9,358	4,018	28,680	9,358	4,018	28,680	-	-	-	
		3-45	청소년수련시설(영어체험마을)3	4,075	259	1,298	4,075	259	1,298	-	-	-	
	숙박시설	소 계		14,696	2,880	98,944	14,696	2,880	98,944	-	-	-	
		3-47	타워형콘도1	14,696	2,880	98,944	14,696	2,880	98,944	-	-	-	
	공공편익시설	소 계		9,283	-	-	9,283	-	-	-	-	-	
			도로	6,663	-	-	6,663	-	-	-	-	-	
			산책로	1,188	-	-	1,188	-	-	-	-	-	
		6-38	광장1	566	-	-	566	-	-	-	-	-	
		6-39	광장2	866	-	-	866	-	-	-	-	-	
	녹지	소 계		76,341	-	-	76,341	-	-	-	-	-	
		7-1	녹지	76,341	-	-	76,341	-	-	-	-	-	
복합스포츠지구	계			214,338	40,400	102,471	214,338	40,400	102,471	-	-	-	
	운동오락시설	소 계		43,290	33,800	82,621	43,290	33,800	82,621	-	-	-	
		2-99	스포츠콤플렉스	43,290	33,800	82,621	43,290	33,800	82,621	-	-	-	
	휴양문화시설	소 계		6,100	-	-	6,100	-	-	-	-	-	
		3-52	야유회장	6,100	-	-	6,100	-	-	-	-	-	
	숙박시설	소 계		8,543	2,500	6,350	8,543	2,500	6,350	-	-	-	
		3-50	콘도1	3,807	1,000	1,950	3,807	1,000	1,950	-	-	-	
		3-51	콘도2	4,736	1,500	4,400	4,736	1,500	4,400	-	-	-	
	상가시설	소 계		10,668	4,100	13,500	10,668	4,100	13,500	-	-	-	
		3-53	푸드센터(일반음식점)	3,833	1,500	5,500	3,833	1,500	5,500	-	-	-	
		5-37	매점1(상가)	962	800	2,000	962	800	2,000	-	-	-	
		5-38	종합위락센터(휴게음식점)	5,873	1,800	6,000	5,873	1,800	6,000	-	-	-	
	공공편익시설	소 계		22,521	-	-	22,521	-	-	-	-	-	
			도로	20,609	-	-	20,609	-	-	-	-	-	
			산책로	121	-	-	121	-	-	-	-	-	
		6-3	주차장1	1,420	-	-	1,420	-	-	-	-	-	
		6-30	광장3	371	-	-	371	-	-	-	-	-	
	녹지	소 계		123,216	-	-	123,216	-	-	-	-	-	
		7-4	녹지	123,216	-	-	123,216	-	-	-	-	-	
타워콘도지구	계			87,657	15,798	80,983	87,657	15,798	80,983	-	-	-	
	운동오락시설	소계		10,193	638	638	10,193	638	638	-	-	-	
		1-11	워터파크	10,193	638	638	10,193	638	638	-	-	-	
	숙박시설	소 계		16,565	14,471	79,656	16,565	14,471	79,656	-	-	-	
		3-6	호텔1(타워형콘도및호텔)	16,565	14,471	79,656	16,565	14,471	79,656	-	-	-	
	휴양문화시설	소 계		7,808	689	689	7,808	689	689	-	-	-	
		3-81	놀이동산(토이랜드3)	7,808	689	689	7,808	689	689	-	-	-	
	공공편익시설	소 계		17,082	-	-	17,082	-	-	-	-	-	
			도로	14,051	-	-	14,051	-	-	-	-	-	
			산책로	742	-	-	742	-	-	-	-	-	
		6-26	주차장12	2,289	-	-	2,289	-	-	-	-	-	
		6-40	광장4	-	-	-	-	-	-	-	-	-	
	녹지	소 계		36,009	-	-	36,009	-	-	-	-	-	
		7-7	녹지	36,009	-	-	36,009	-	-	-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시설지구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씨사이드복합휴양지구	계			108,985	19,389.90	108,938.40	108,708	20,312.53	108,069.10	-277	922.63	-869.30	
	숙박시설	소 계		43,900	13,292.27	107,235.70	46,699	14,612.59	106,164.23	2,799	1,320.32	-1,071.47	
		3-10	생활형숙박시설	25,844	5,768.20	77,238.35	26,679	7,037.87	76,138.39	835	1,269.67	-1,099.96	변경
		3-11	휴양콘도미니엄	18,056	7,524.07	29,997.35	20,020	7,574.72	30,025.84	1,964	50.65	28.49	변경
	운동오락시설	소 계		19,261	4,505.72	306.74	19,248	1,689.82	446.49	-13	-2,815.90	139.75	
		1-13	스파	19,261	4,505.72	306.74	19,248	1,689.82	446.49	-13	-2,815.90	139.75	변경
	휴양문화시설	소 계		10,074	370.94	263.1	10,272	324.30	274.97	198	-46.64	11.87	
		4-13	글램핑장	10,074	370.94	263.1	10,272	324.30	274.97	198	-46.64	11.87	변경
	상가시설	소 계		8,729	1,220.97	1,132.86	8,010	3,685.82	1,183.41	-719	2,464.85	50.55	
		5-8	판매시설	8,729	1,220.97	1,132.86	8,010	3,685.82	1,183.41	-719	2,464.85	50.55	변경
	공공편익시설	소 계		11,314	-	-	10,259	-	-	-1,055	-	-	
			도로	9,602	-	-	8,383	-	-	-1,209	-	-	변경
		6-80	주차장13	981	-	-	992	-	-	11	-	-	변경
		6-81	주차장14	731	-	-	874	-	-	143	-	-	변경
	녹지	소 계		15,707	-	-	14,220	-	-	-1,487	-	-	
		7-18	녹지	15,707	-	-	14,220	-	-	-1,487	-	-	변경
테마파크지구	계			392,372	22,876	111,792	392,649	22,876	111,792	277	-	-	
	운동오락시설	소 계		55,586	13,916	78,792	55,686	13,916	78,792	-	-	-	
		1-4	울산안전체험관	30,892	8,000	55,400	30,892	8,000	55,400	-	-	-	
		1-5	영상모험관	3,498	750	2,250	3,498	750	2,250	-	-	-	
		1-6	환상의집	7,317	4,000	20,000	7,317	4,000	20,000	-	-	-	
		1-7	잔디썰매장	4,360	-	-	4,360	-	-	-	-	-	
		1-8	키즈오토파크	7,428	1,166	1,142	7,428	1,166	1,142	-	-	-	
		1-10	번지점프장	1,635	-	-	1,635	-	-	-	-	-	
		2-8	체력단련코스1	88	-	-	88	-	-	-	-	-	
		2-9	체력단련코스2	78	-	-	78	-	-	-	-	-	
		2-10	체력단련코스3	90	-	-	90	-	-	-	-	-	
		2-11	체력단련코스4	100	-	-	100	-	-	-	-	-	
		2-12	체력단련코스5	100	-	-	100	-	-	-	-	-	
		2-13	체력단련코스6	100	-	-	100	-	-	-	-	-	
	숙박시설	소 계		5,307	1,100	18,000	5,307	1,100	18,000	-	-	-	
		3-13	호텔2	5,307	1,100	18,000	5,307	1,100	18,000	-	-	-	
	휴양문화시설	소 계		12,962	1,000	1,000	12,962	1,000	1,000	-	-	-	
		3-17	놀이동산(토이랜드)1	930	500	500	930	500	500	-	-	-	
		3-18	놀이동산(토이랜드)2	8,655	500	500	8,655	500	500	-	-	-	
		3-19	휴게소1	103	-	-	103	-	-	-	-	-	
		3-21	휴게소2	201	-	-	201	-	-	-	-	-	
		3-22	휴게소3	2,423	-	-	2,423	-	-	-	-	-	
		3-23	휴게소4	150	-	-	150	-	-	-	-	-	
		3-24	휴게소5	200	-	-	200	-	-	-	-	-	
		3-25	휴게소6	150	-	-	150	-	-	-	-	-	
		3-26	휴게소7	150	-	-	150	-	-	-	-	-	
	상가시설	소 계		20,288	5,840	12,980	20,288	5,840	12,980	-	-	-	
		5-7	전망카페	656	300	300	656	300	300	-	-	-	
		5-9	휴게음식점1	2,598	1,200	2,400	2,598	1,200	2,400	-	-	-	
		5-11	휴게음식점2	2,472	1,500	3,000	2,472	1,500	3,000	-	-	-	
		5-12	매점2(토이샵)	3,921	1,600	4,800	3,921	1,600	4,800	-	-	-	
		5-13	전망휴게소(일반음식점)	959	240	480	959	240	480	-	-	-	
		5-21	휴게음식점3	9,682	1,000	2,000	9,682	1,000	2,000	-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시설지구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테마파크지구		소 계		31,724	1,020	1,020	32,001	1,020	1,020	-	-	-	
		도로		22,780	-	-	23,057	-	-	-	-	-	변경
	공공편익시설		산책로	3,518	-	-	3,518	-	-	-	-	-	
		6-12	공중화장실1	287	60	60	287	60	60	-	-	-	
		6-13	공중화장실2	161	60	60	161	60	60	-	-	-	
		6-20	주차장8	2,609	-	-	2,609	-	-	-	-	-	
		6-32	광장5	616	-	-	616	-	-	-	-	-	
		6-33	광장	1,753	900	900	1,753	900	900	-	-	-	
	녹지	소 계		266,405	-	-	266,405	-	-	-	-	-	
		7-26	녹지	266,405	-	-	266,405	-	-	-	-	-	
연수여가지구	계			178,777	9,750	104,430	178,777	9,750	104,430	-	-	-	
	숙박시설	소 계		9,840	3,500	93,500	9,840	3,500	93,500	-	-	-	
		3-48	MICE복합센터	9,840	3,500	93,500	9,840	3,500	93,500	-	-	-	
	휴양문화시설	소 계		15,157	1,500	1,500	15,157	1,500	1,500	-	-	-	
		3-54	휴게소9	102	-	-	102	-	-	-	-	-	
		3-55	휴게소10	104	-	-	104	-	-	-	-	-	
		3-56	휴게소11	107	-	-	107	-	-	-	-	-	
		3-57	휴게소12	98	-	-	98	-	-	-	-	-	
		3-76	직장인아트센터/여가창조관	12,639	1,500	1,500	12,639	1,500	1,500	-	-	-	
		3-77	향기정원	1,728	-	-	1,728	-	-	-	-	-	
		3-78	휴게소13	379	-	-	379	-	-	-	-	-	
	운동오락시설	소 계		7,305	4,200	8,400	7,305	4,200	8,400	-	-	-	
		4-99	승마힐링센터(승마체험장및마사)	7,305	4,200	8,400	7,305	4,200	8,400	-	-	-	
	상가시설	소 계		1,969	500	900	1,969	500	900	-	-	-	
		5-24	휴게음식점4	1,969	500	900	1,969	500	900	-	-	-	
	공공편익시설	소 계		17,794	50	130	17,794	50	130	-	-	-	
			도로	13,746	-	-	13,746	-	-	-	-	-	
			산책로	1,592	-	-	1,592	-	-	-	-	-	
		6-22	주차장9	1,107	-	-	1,107	-	-	-	-	-	
		6-14	관리사무소1	1,349	50	130	1,349	50	130	-	-	-	
	녹지	소 계		126,712	-	-	126,712	-	-	-	-	-	
		7-51	녹지	126,712	-	-	126,712	-	-	-	-	-	
건강휴양지구	계			78,330	4,570	8,970	78,330	4,570	8,970	-	-	-	
	숙박시설	소 계		3,424	1,500	4,000	3,424	1,500	4,000	-	-	-	
		3-75	콘도3	3,424	1,500	4,000	3,424	1,500	4,000	-	-	-	
	휴양문화시설	소 계		13,192	2,000	3,400	13,192	2,000	3,400	-	-	-	
		3-35	휴게소14	92	-	-	92	-	-	-	-	-	
		3-36	휴게소15	105	-	-	105	-	-	-	-	-	
		3-37	휴게소16	314	-	-	314	-	-	-	-	-	
		3-79	힐링센터	12,374	2,000	3,400	12,374	2,000	3,400	-	-	-	
		3-80	휴게소17	307	-	-	307	-	-	-	-	-	
	상가시설	소 계		2,740	1,000	1,500	2,740	1,000	1,500	-	-	-	
		5-33	야외카페테리아	2,740	1,000	1,500	2,740	1,000	1,500	-	-	-	
	공공편익시설	소 계		7,003	70	70	7,003	70	70	-	-	-	
			도로	1,059	-	-	1,059	-	-	-	-	-	
			산책로	1,614	-	-	1,614	-	-	-	-	-	
		6-7	주차장10	3,242	-	-	3,242	-	-	-	-	-	
		6-11	관리사무소2	1,088	70	70	1,088	70	70	-	-	-	
	녹지	소 계		51,971	-	-	51,971	-	-	-	-	-	
		7-62	녹지	51,971	-	-	51,971	-	-	-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시설지구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허브테마지구	계			176,217	17,953	139,273	176,217	17,953	139,273	-	-	-	
	숙박시설	소 계		63,668	17,953	139,273	63,668	17,953	139,273	-	-	-	
		3-39	테라스형콘도1	4,630	1,626	4,382	4,630	1,626	4,382	-	-	-	
		3-40	빌라형콘도1	7,905	2,215	7,304	7,905	2,215	7,304	-	-	-	
		3-61	테라스형콘도2	4,495	1,626	4,382	4,495	1,626	4,382	-	-	-	
		3-62	빌라형콘도2	7,165	2,215	7,304	7,165	2,215	7,304	-	-	-	
		3-63	타워형콘도2	7,033	2,115	34,913	7,033	2,115	34,913	-	-	-	
		3-64	단독형콘도	5,782	928	1,628	5,782	928	1,628	-	-	-	
		3-72	타워형콘도3(스파)	14,400	3,487	43,092	14,400	3,487	43,092	-	-	-	
		3-73	테라스형콘도3	6,118	1,626	4,382	6,118	1,626	4,382	-	-	-	
		3-74	타워형콘도4	6,140	2,115	31,886	6,140	2,115	31,886	-	-	-	
	휴양문화시설	소 계		15,305	-	-	15,305	-	-	-	-	-	
		3-12	허브가든1	422	-	-	422	-	-	-	-	-	
		3-44	허브가든2	531	-	-	531	-	-	-	-	-	
		3-59	허브가든3	425	-	-	425	-	-	-	-	-	
		3-60	허브가든4	425	-	-	425	-	-	-	-	-	
		4-11	조각공원	13,502	-	-	13,502	-	-	-	-	-	
	공공편익시설	소 계		18,238	-	-	18,238	-	-	-	-	-	
			도로	8,167	-	-	8,167	-	-	-	-	-	
			산책로	2,014	-	-	2,014	-	-	-	-	-	
		6-29	주차장11	5,701	-	-	5,701	-	-	-	-	-	
		6-34	광장(교통)1	585	-	-	585	-	-	-	-	-	
		6-35	광장(교통)2	607	-	-	607	-	-	-	-	-	
		6-37	광장7	1,164	-	-	1,164	-	-	-	-	-	
	녹지	소 계		79,006	-	-	79,006	-	-	-	-	-	
		7-30	녹지	79,006	-	-	79,006	-	-	-	-	-	

Ⅲ. 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1. 총괄조서 (변경)

구 분	부지면적(m^2)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1,367,240	1,367,240	100.0	100.0	
시 설 면 적	591,873	593,360	43.3	43.4	증) 1,487
녹 지 면 적	775,367	773,880	56.7	56.6	감) 1,487

2. 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단위 : ㎡, %)

구 분		토지이용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367,240	-	1,367,240	142,281.90	증)922.63	143,204.53	793,190.40	감)869.30	792.321.10	
세부시설	소 계	591,873	증)1,487	593,360	142,281.90	증) 922.63	143,204.53	793,190.40	감)869.30	792.321.10	
	휴양시설	255,058	증)2,997	258,055	70,129.21	감) 2,815.90	67,313.31	593,907.80	감)1.059.60	592.848.20	
	유희시설	91,521	감)13	91,508	19,059.72	증) 1,273.68	20,333.40	79,736.74	증)139.75	79.876.49	
	운동시설	48,967	-	48,967	36,592.00	-	36,592.00	85,413.00	-	85,413.00	
	특수시설	20,807	-	20,807	4,200.00	-	4,200.00	8,400.00	-	8,400.00	
	편익시설	40,561	감)719	39,842	11,160.97	증) 2,464.85	13,625.82	24,512.86	증)50.55	24.563.41	
	관리시설	134,959	감)778	134,181	1,140.00	-	1,140.00	1,220.00	-	1,220.00	
녹지 및 기타		775,367	감)1,487	773,880	-	-	-	-	-	-	

3. 지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

구분	계		청소년 수련지구	복합 스포츠 지구	타워 콘도지구	씨사이드 복합휴양지구		테마 파크지구		연수 여가지구	건강 휴양지구	허브 테마지구
	기 정	변 경	기정	기정	기정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기정	기정
소계	1,367,240	1,367,240	130,564	214,338	87,657	108,985	108,708	392,372	392,649	178,777	78,330	176,217
휴양시설	255,058	258,055	32,882	18,476	24,373	53,974	56,971	18,269	18,269	24,997	16,616	65,471
유희시설	91,521	91,508	6,937	-	10,193	19,261	19,248	55,130	55,130	-	-	-
운동시설	48,967	48,967	5,121	43,290	-	-	-	556	556	-	-	-
특수시설	20,807	20,807	-	-	-	-	-	-	-	7,305	-	13,502
편익시설	40,561	39,842	-	6,835	-	8,729	8,010	20,288	20,288	1,969	2,740	-
관리시설	134,959	134,181	9,283	22,521	17,082	11,314	10,259	31,724	32,001	17,794	7,003	18,238
녹지 및 기타	775,367	773,880	76,341	123,216	36,009	15,707	14,220	266,405	266,405	126,712	51,971	79,006

4. 세부시설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번호	기 정					변 경				
총 계			부지면적(㎡)	시설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부지면적(㎡)	시설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1,367,240		142,281.90	793,190.40		1,367,240		143,204.53	792,321.10	
1. 청소년수련지구(변경없음)			130,564	-	11,545	136,333	8.8%	130,564	-	11,545	136,333	8.8%
유희시설	소 계		6,937	-	-	-	-	6,937	-	-	-	-
	놀이동산(모험놀이시설)	1-12	6,937	-	-	-	-	6,937	-	-	-	-
운동시설	소 계		5,121	-	2,792	2,792	-	5,121	-	2,792	2,792	-
	체육관	2-20	5,121	-	2,792	2,792	-	5,121	-	2,792	2,792	-
휴양시설	소 계		32,882	-	8,753	133,541	-	32,882	-	8,753	133,541	-
	청소년수련시설(영어체험마을)	3-1	4,753	1층1동, 2층2동/지하1층	1,596	4,619	-	4,753	1층1동, 2층2동/지하1층	1,596	4,619	-
	청소년수련시설(영어체험마을)	3-2	9,358	2층3동, 7층2동/지하1층	4,018	28,680	-	9,358	2층3동, 7층2동/지하1층	4,018	28,680	-
	청소년수련시설(영어체험마을)	3-45	4,075	5층5동	259	1,298	-	4,075	5층5동	259	1,298	-
	타워형콘도	3-47	14,696	36층3동, 27층2동/지하3층	2,880	98,944	-	14,696	36층3동, 27층2동/지하3층	2,880	98,944	-
관리시설	소 계		9,283	-	-	-	-	9,283	-	-	-	-
	도로		6,663	-	-	-	-	6,663	-	-	-	-
	산책로		1,188	-	-	-	-	1,188	-	-	-	-
	광장	6-38	566	-	-	-	-	566	-	-	-	-
	광장	6-39	866	-	-	-	-	866	-	-	-	-
녹지	소 계		76,341	-	-	-	-	76,341	-	-	-	-
	녹지	7-1	76,341	-	-	-	-	76,341	-	-	-	-
2. 복합스포츠지구(변경없음)			214,338	-	40,400	102,471	18.8%	214,338	-	40,400	102,471	18.8%
운동오락시설	소 계		43,290	-	33,800	82,621	-	43,290	-	33,800	82,621	-
	스포츠콤플렉스	2-99	43,290	7층1동/지하1층	33,800	82,621	-	43,290	7층1동/지하1층	33,800	82,621	-
휴양시설	소 계		18,476	-	4,000	11,850	-	18,476	-	4,000	11,850	-
	콘도	3-50	3,807	2층3동/지하1층	1,000	1,950	-	3,807	2층3동/지하1층	1,000	1,950	-
	콘도	3-51	4,736	2층3동/지하1층	1,500	4,400	-	4,736	2층3동/지하1층	1,500	4,400	-
	야유회장	3-52	6,100	-	-	-	-	6,100	-	-	-	-
	푸드센터(일반음식점)	3-53	3,833	3층1동/지하1층	1,500	5,500	-	3,833	3층1동/지하1층	1,500	5,500	-
편익시설	소 계		6,835	-	2,600	8,000	-	6,835	-	2,600	8,000	-
	매점(상가)	5-37	962	3층1동/지하1층	800	2,000	-	962	3층1동/지하1층	800	2,000	-
	휴게음식점(종합위락센터)	5-38	5,873	3층1동/지하1층	1,800	6,000	-	5,873	3층1동/지하1층	1,800	6,000	-
관리시설	소 계		22,521	-	-	-	-	22,521	-	-	-	-
	도로		20,609	-	-	-	-	20,609	-	-	-	-
	산책로		121	-	-	-	-	121	-	-	-	-
	주차장	6-3	1,420	-	-	-	-	1,420	-	-	-	-
	광장	6-30	371	-	-	-	-	371	-	-	-	-
녹지	소 계		123,216	-	-	-	-	123,216	-	-	-	-
	녹지	7-4	123,216	-	-	-	-	123,216	-	-	-	-
3. 타워콘도지구(변경없음)			87,657	-	15,798	80,983	19.26%	87,657	-	15,798	80,983	19.26%
휴양시설	소 계		24,373	-	15,160	80,345	-	24,373	-	15,160	80,345	-
	호텔(타워형콘도및호텔)	3-6	16,565	26층/1동 22층/1동 15층1동/지하4층	14,471	79,656	-	16,565	26층/1동 22층/1동 15층1동/지하4층	14,471	79,656	-
	놀이동산(토이랜드3)	3-81	7,808	1층	689	689	-	7,808	1층	689	689	-
유희시설	워터파크	1-11	10,193	1층	638	638	-	10,193	1층	638	638	-
관리시설	소 계		17,082	-	-	-	-	17,082	-	-	-	-
	도로		14,051	-	-	-	-	14,051	-	-	-	-
	산책로		742	-	-	-	-	742	-	-	-	-
	주차장12	6-26	2,289	-	-	-	-	2,289	-	-	-	-
	광장	6-40	-	-	-	-	-	-	-	-	-	-
녹지	소 계		36,009	-	-	-	-	36,009	-	-	-	-
	녹지	7-7	36,009	-	-	-	-	36,009	-	-	-	-

구 분			기 정					변 경				
총 계		번호	부지면적 (㎡)	시설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부지면적 (㎡)	시설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4.씨사이드 복합휴양지구(변경)			108,985	-	19,389.90	108,938.40	17.79%	108,708	-	20,312.53	108,069.10	18.69%
유희시설	소 계		19,261	-	4,505.72	306.74	-	19,248	-	1,689.82	446.49	-
	스파	1-13	19,261	지하4~1층1동	4,505.72	306.74	-	19,248	지하5~1층1동	1,689.82	446.49	-
휴양시설	소 계		53,974	-	13,663.21	107,498.80	-	56,971	-	14,936.89	106,439.20	-
	생활형숙박시설	3-10	25,844	지하3~45층3동	5,768.20	77,238.35	-	26,679	지하5~43층3동	7,037.87	76,138.39	-
	휴양콘도미니엄	3-11	18,056	지하4~29층1동	7,524.07	29,997.35	-	20,020	지하5~29층1동	7,574.72	30,025.84	-
	글램핑장	4-13	10,074	지하1~1층1동	370.94	263.1	-	10,272	1층1동	324.30	274.97	-
편익시설	소 계		8,729	-	1,220.97	1,132.86	-	8,010	-	3,685.82	1,183.41	-
	판매시설	5-8	8,729	지하2~1층1동	1,220.97	1,132.86	-	8,010	지하2~1층1동	3,685.82	1,183.41	-
관리시설	소 계		11,314	-	-	-	-	10,259	-			-
	도로		9,602	-	-	-	-	8,393	-			-
	주차장 13	6-80	981	-	-	-	-	992	-			-
	주차장 14	6-81	731	-	-	-	-	874	-			-
녹지	소계		15,707	-	-	-	-	14,220	-			-
	녹지	7-18	15,707	-	-	-	-	14,220	-			-
5.테마파크지구(변경)			392,372	-	22,876	111,792	5.8%	392,649	-	22,876	111,792	5.8%
유희시설	소 계		55,130	-	13,916	78,792	-	55,130	-	13,916	78,792	-
	울산안전 체험관	1-4	30,892	5층1동/지하1층,7층1동/지하1층	8,000	55,400	-	30,892	5층1동/지하1층,7층1동/지하1층	8,000	55,400	-
	영상모험관	1-5	3,498	3층1동/지하1층	750	2,250	-	3,498	3층1동/지하1층	750	2,250	-
	환상의집	1-6	7,317	5층1동	4,000	20,000	-	7,317	5층1동	4,000	20,000	-
	잔디썰매장	1-7	4,360	-	-	-	-	4,360	-	-	-	-
	키즈오토파크	1-8	7,428	1층2동	1,166	1,142	-	7,428	1층2동	1,166	1,142	-
	번지점프장	1-10	1,635	-	-	-	-	1,635	-	-	-	-
운동시설	소 계		556	-	-	-	-	556	-	-	-	-
	체력단련코스	2-8	88	-	-	-	-	88	-	-	-	-
	체력단련코스	2-9	78	-	-	-	-	78	-	-	-	-
	체력단련코스	2-10	90	-	-	-	-	90	-	-	-	-
	체력단련코스	2-11	100	-	-	-	-	100	-	-	-	-
	체력단련코스	2-12	100	-	-	-	-	100	-	-	-	-
	체력단련코스	2-13	100	-	-	-	-	100	-	-	-	-
휴양시설	소 계		18,269	-	2,100	19,000	-	18,269	-	2,100	19,000	-
	호텔	3-13	5,307	17층1동/지하2층	1,100	18,000	-	5,307	17층1동/지하2층	1,100	18,000	-
	놀이동산(토이랜드)	3-17	930	1층5동	500	500	-	930	1층5동	500	500	-
	놀이동산(토이랜드)	3-18	8,655	1층8동	500	500	-	8,655	1층8동	500	500	-
	휴게소1	3-19	103	-	-	-	-	103	-	-	-	-
	휴게소2	3-21	201	-	-	-	-	201	-	-	-	-
	휴게소3	3-22	2,423	-	-	-	-	2,423	-	-	-	-
	휴게소4	3-23	150	-	-	-	-	150	-	-	-	-
	휴게소5	3-24	200	-	-	-	-	200	-	-	-	-
	휴게소6	3-25	150	-	-	-	-	150	-	-	-	-
	휴게소7	3-26	150	-	-	-	-	150	-	-	-	-
편익시설	소 계		20,288	-	5,840	12,980	-	20,288	-	5,840	12,980	-
	휴게음식점(전망카페)	5-7	656	-	300	300	-	656	-	300	300	-
	휴게음식점	5-9	2,598	-	1,200	2,400	-	2,598	-	1,200	2,400	-
	휴게음식점	5-11	2,472	-	1,500	3,000	-	2,472	-	1,500	3,000	-
	매점(토이샵)	5-12	3,921	-	1,600	4,800	-	3,921	-	1,600	4,800	-
	일반음식점(전망휴게소)	5-13	959	-	240	480	-	959	-	240	480	-
	휴게음식점	5-21	9,682	-	1,000	2,000	-	9,682	-	1,000	2,000	-

구 분			기 정					변 경				
총 계		번호	부지면적(㎡)	시설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부지면적(㎡)	시설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관리시설	**소 계**		31,724	-	1,020	1,020	-	**32,001**	-	1,020	1,020	-
	도 로		22,780	-	-	-	-	**23,057**	-	-	-	-
	산책로		3,518	-	-	-	-	3,518	-	-	-	-
	공중화장실	6-12	287	1층1동	60	60	-	287	1층1동	60	60	-
	공중화장실	6-13	161	1층1동	60	60	-	161	1층1동	60	60	-
	주차장	6-20	2,609	-	-	-	-	2,609	-	-	-	-
	광장	6-32	616	-	-	-	-	616	-	-	-	-
	광장	6-33	1,753	2층1동	900	900	-	1,753	2층1동	900	900	-
녹지	**소계**		266,405	-	-	-	-	266,405	-	-	-	-
	녹지	7-26	266,405	-	-	-	-	266,405	-	-	-	-
6. 연수여가지구(변경없음)			**178,777**	**-**	**9,750**	**104,430**	**5.5%**	**178,777**	**-**	**9,750**	**104,430**	**5.5%**
휴양시설	소 계		24,997	-	5,000	95,000	-	24,997	-	5,000	95,000	-
	MICE 복합센터	3-48	9,840	27층1동/지하2층	3,500	93,500	-	9,840	27층1동/지하2층	3,500	93,500	-
	휴게소9	3-54	102	-	-	-	-	102	-	-	-	-
	휴게소10	3-55	104	-	-	-	-	104	-	-	-	-
	휴게소11	3-56	107	-	-	-	-	107	-	-	-	-
	휴게소12	3-57	98	-	-	-	-	98	-	-	-	-
	직장인아트센터/여가창조관	3-76	12,639	1층2동	1,500	1,500	-	12,639	1층2동	1,500	1,500	-
	향기정원	3-77	1,728	-	-	-	-	1,728	-	-	-	-
	휴게소13	3-78	379	-	-	-	-	379	-	-	-	-
특수시설	소 계		7,305	-	4,200	8,400	-	7,305	-	4,200	8,400	-
	승마힐링센터(승마체험장 및 마사)	4-99	7,305	2층1동/지하1층,3층1동/지하1층	4,200	8,400	-	7,305	2층1동/지하1층,3층1동/지하1층	4,200	8,400	-
편익시설	소 계		1,969	-	500	900	-	1,969	-	500	900	-
	휴게음식점	5-24	1,969	2층1동/지하1층	500	900	-	1,969	2층1동/지하1층	500	900	-
관리시설	소 계		17,794	-	50	130	-	17,794	-	50	130	-
	도로		13,746	-	-	-	-	13,746	-	-	-	-
	산책로		1,592	-	-	-	-	1,592	-	-	-	-
	주차장	6-22	1,107	-	-	-	-	1,107	-	-	-	-
	관리사무소1	6-14	1,349	2층1동	50	130	-	1,349	2층1동	50	130	-
녹지	소 계		126,712	-	-	-	-	126,712	-	-	-	-
	녹지	7-51	126,712	-	-	-	-	126,712	-	-	-	-
7.건강휴양지구(변경없음)			**78,330**	**-**	**4,570**	**8,970**	**5.8%**	**78,330**	**-**	**4,570**	**8,970**	**5.8%**
휴양시설	소 계		16,616		3,500	7,400		16,616		3,500	7,400	
	휴게소14	3-35	92	-	-	-	-	92	-	-	-	-
	휴게소15	3-36	105	-	-	-	-	105	-	-	-	-
	휴게소16	3-37	314	-	-	-	-	314	-	-	-	-
	콘도	3-75	3,424	3층5동/지하1층	1,500	4,000	-	3,424	3층5동/지하1층	1,500	4,000	-
	힐링센터	3-79	12,374	3층2동/지하2층	2,000	3,400	-	12,374	3층2동/지하2층	2,000	3,400	-
	휴게소17	3-80	307	-	-	-	-	307	-	-	-	-
편익시설	소 계		2,740	-	1,000	1,500	-	2,740	-	1,000	1,500	-
	야외카페테리아	5-33	2,740	2층1동/지하1층	1,000	1,500	-	2,740	2층1동/지하1층	1,000	1,500	-
관리시설	소 계		7,003	-	70	70	-	7,003	-	70	70	-
	도로		1,059	-	-	-	-	1,059	-	-	-	-
	산책로		1,614	-	-	-	-	1,614	-	-	-	-
	주차장	6-7	3,242	-	-	-	-	3,242	-	-	-	-
	관리사무소2	6-11	1,088	-	70	70	-	1,088	-	70	70	-
녹지	소 계		51,971	-	-	-	-	51,971	-	-	-	-
	녹지	7-62	51,971	-	-	-	-	51,971	-	-	-	-

구 분			기 정					변 경				
총 계		번호	부지면적(㎡)	시설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부지면적(㎡)	시설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8. 허브테마지구(변경없음)			176,217	-	17,953	139,273	10.2%	176,217	-	17,953	139,273	10.2%
휴양시설	소 계		65,471	-	17,953	139,273	-	65,471	-	17,953	139,273	-
	테라스형콘도	3-39	4,630	3층3동/지하1층	1,626	4,382	-	4,630	3층3동/지하1층	1,626	4,382	-
	빌라형콘도	3-40	7,905	6층3동/지하1층	2,215	7,304	-	7,905	6층3동/지하1층	2,215	7,304	-
	휴게소(허브가든)	3-12	422	-	-	-	-	422	-	-	-	-
	휴게소(허브가든)	3-44	531	-	-	-	-	531	-	-	-	-
	휴게소(허브가든)	3-59	425	-	-	-	-	425	-	-	-	-
	휴게소(허브가든)	3-60	425	-	-	-	-	425	-	-	-	-
	테라스형콘도	3-61	4,495	3층3동/지하1층	1,626	4,382	-	4,495	3층3동/지하1층	1,626	4,382	-
	빌라형콘도2	3-62	7,165	6층3동/지하1층	2,215	7,304	-	7,165	6층3동/지하1층	2,215	7,304	-
	타워형콘도	3-63	7,033	26층1동, 24층1동, 지하3층	2,115	34,913	-	7,033	26층1동, 24층1동, 지하3층	2,115	34,913	-
	단독형콘도	3-64	5,782	2층5동, 지하1층	928	1,628	-	5,782	2층5동, 지하1층	928	1,628	-
	타워형콘도(스파)	3-72	14,400	34층1동, 지하3층	3,487	43,092	-	14,400	34층1동, 지하3층	3,487	43,092	-
	테라스형콘도	3-73	6,118	3층3동/지하1층	1,626	4,382	-	6,118	3층3동/지하1층	1,626	4,382	-
	타워형콘도	3-74	6,140	22층1동, 20층1동/지하2층	2,115	31,886	-	6,140	22층1동, 20층1동/지하2층	2,115	31,886	-
특수시설	소 계		13,502	-	-	-	-	13,502	-	-	-	-
	조각공원	4-11	13,502	-	-	-	-	13,502	-	-	-	-
관리시설	소 계		18,238	-	-	-	-	18,238	-	-	-	-
	도로		8,167	-	-	-	-	8,167	-	-	-	-
	산책로		2,014	-	-	-	-	2,014	-	-	-	-
	주차장	6-29	5,701	-	-	-	-	5,701	-	-	-	-
	광장(교통)	6-34	585	-	-	-	-	585	-	-	-	-
	광장(교통)	6-35	607	-	-	-	-	607	-	-	-	-
	광장	6-37	1,164	-	-	-	-	1,164	-	-	-	-
녹지	소 계		79,006	-	-	-	-	79,006	-	-	-	-
	녹지	7-30	79,006	-	-	-	-	79,006	-	-	-	-

5. 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53	12,028	107,466	9	4,132	65,402	11	2,629	22,044	33	5,267	20,020
변경		53	12,028	**106,534**	9	4,132	**64,708**	11	2,629	22,044	33	5,267	**19,782**
기정	대로	-	-	-	-	-	-	-	-	-	-	-	-
기정	중로	2	2,244	43,476	1	1,895	37,932	-	-	-	1	349	5,544
변경		2	2,244	**43,515**	1	1,895	**38,209**	-	-	-	1	349	**5,306**
기정	소로	51	9,784	63,990	8	2,237	27,470	11	2,629	22,044	32	4,918	14,476
변경		51	9,784	**63,019**	8	2,237	**26,499**	11	2,629	22,044	32	4,918	14,476

○도로 세부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합계**				**53개노선**	**12,028**	**107,466**						
변경					**53개노선**	**12,028**	**106,534**						
기정	중로	1	1	22		1,895	37,932	대2-28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1**	**22**		**1,895**	**38,209**	**대2-28**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면적증가**
기정	**소계**				**1개노선**	**1,895**	**37,932**						
변경					**1개노선**	**1,895**	**38,209**						**면적증가**
기정	중로	3	1	7~25	진입로	349	5,544	중1-1	생숙3-10, 콘도3-11, 주차장6-80	일반도로	씨사이드복합휴양		
변경	**중로**	**3**	**1**	**7~25**	**진입로**	**349**	**5,306**	**중1-1**	**생숙3-10, 콘도3-11, 주차장6-80**	**일반도로**	**씨사이드복합휴양**		**면적감소**
기정	**소계**				**1개노선**	**349**	**5,544**						
변경					**1개노선**	**349**	**5,306**						**면적감소**
기정	소로	1	5	10	관리도로	557	5,571	중1-1	광장6-32	일반도로	테마		
기정	소로	1	8	10	관리도로	91	1,059	남측구역계	관리사무소2 6-11	일반도로	건강		
기정	소로	1	9	10	연결로	430	4,573	중1-1	타워형콘도 3-47	일반도로	청소년		
기정	소로	1	10	10	진입로	53	530	중1-1	스포츠콤플렉스2-99	일반도로	복합		
기정	소로	1	11	10	연결로	167	1,670	중1-1	스포츠콤플렉스2-99	일반도로	복합		
기정	소로	1	12	10	내부순환	245	2,450	중1-1	소1-5	일반도로	복합		
기정	소로	1	13	10~15	진입로	623	7,559	중1-1	중1-1	일반도로	타워		
기정	소로	1	14	7~16	진입로	71	4,058	대2-28	스파1-13	일반도로	씨사이드복합휴양		
변경	**소로**	**1**	**14**	**7~16**	**진입로**	**71**	**3,087**	**대2-28**	**스파1-13**	**일반도로**	**씨사이드복합휴양**		**면적감소**
기정	**소계**				**8개노선**	**2,306**	**27,470**						
변경					**8개노선**	**2,237**	**26,49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	8	내부순환	1,238	9,904	광장6-32	광장 6-34	일반도로	허브 테마		
기정	소로	2	4	8	진입로	77	616	소2-5	남동측 구역계	일반도로	테마		
기정	소로	2	5	8	내부순환	190	1,968	소3-72	남동측 구역계	일반도로	테마		
기정	소로	2	7	8	연결로	148	1,184	소1-9	청소년 수련시설3-2	일반도로	청소년		
기정	소로	2	9	8	내부순환	18	165	소1-9	녹지7-7	일반도로	청소년		
기정	소로	2	10	7	연결로	135	945	소1-12	광장6-30	일반도로	복합		
기정	소로	2	11	8	연결로	67	536	광장 6-37	광장6-35	일반도로	허브		
기정	소로	2	12	6~ 9.5	내부순환	360	3,420	중1-1	승마힐링센 터 4-99	일반도로	연수		
기정	소로	2	13	9	진입로	71	639	남측구역 계	소2-3	일반도로	허브		
기정	소로	2	14	9	진출로	67	603	남측구역 계	소2-3	일반도로	허브		
기정	소로	2	16	8	내부순환	258	2,064	소2-3	환상의집 1-6	일반도로	테마		
기정	**소 계**				**11개노선**	**2,629**	**22,044**						
기정	소로	3	7	5	진입로	367	1,832	동측 구역계	소2-16	일반도로	테마		
기정	소로	3	20	2	산책로	15	30	휴게소2 3-21	영상모험관 1-5	특수도로	테마		
기정	소로	3	21	2	산책로	115	230	소2-16	소3-22	특수도로	테마		
기정	소로	3	22	2	산책로	430	861	휴게소1 3-19	키즈오토파 크 1-8	특수도로	테마		
기정	소로	3	23	2	산책로	20	40	소3-22	울산안전 체험관1-4	특수도로	테마		
기정	소로	3	24	2	산책로	45	90	소3-22	일반음식점 5-13	특수도로	테마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1	2	산책로	195	390	휴게소17 3-80	소1-8	특수도로	건강		
기정	소로	3	33	2	산책로	132	264	소3-53	힐링센터 3-79	특수도로	건강		
기정	소로	3	34	2	산책로	146	292	광장6-32	휴게소 3-12	특수도로	허브		
기정	소로	3	48	3	산책로	122	366	소2-11	조각공원 4-11	특수도로	허브		
기정	소로	3	49	2	산책로	103	206	소3-56	소2-3	특수도로	허브		
기정	소로	3	50	3	산책로	100	300	청소년수련시설3-2	서측 구역계	특수도로	청소년		
기정	소로	3	51	3	산책로	157	471	타워형콘도 3-47	청소년수련시설3-2	특수도로	청소년		
기정	소로	3	52	3	산책로	120	360	소2-3	소2-3	특수도로	허브		
기정	소로	3	53	2	산책로	484	960	휴게소17 3-80	휴게소16 3-37	특수도로	건강		
기정	소로	3	55	2	산책로	77	154	휴게소 3-59	휴게소 3-44	특수도로	허브		
기정	소로	3	56	2	산책로	260	520	휴게소 3-59	휴게소 3-60	특수도로	허브		
기정	소로	3	57	2	산책로	13	26	소2-3	휴게소 3-59	특수도로	허브		
기정	소로	3	58	2	산책로	45	90	휴게소 3-60	빌라형콘도 3-40	특수도로	허브		
기정	소로	3	59	3	산책로	22	66	타워형 콘도3-47	놀이동산 1-12	특수도로	청소년		
기정	소로	3	60	2	산책로	85	171	청소년수련시설3-2	청소년수련 시설3-1	특수도로	청소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61	1.5	산책로	96	147	소1-9	녹지7-7	특수도로	청소년		
기정	소로	3	62	2.5	산책로	300	750	소2-3	놀이동산 3-18	특수도로	테마		
기정	소로	3	64	1.5	산책로	22	33	녹지7-7	광장6-38	특수도로	청소년		
기정	소로	3	66	6	연결로	88	528	소1-12	소1-12	일반도로	복합		
기정	소로	3	67	1.5~2	산책로	86	121	광장 6-30	휴게음식점 5-38	특수도로	복합		
기정	소로	3	68	3	연결로	534	2,066	승마힐링센터 4-99	승마힐링센터 4-99	특수도로	연수		
기정	소로	3	71	3	산책로	119	357	소3-72	체력단련 코스2-8	특수도로	테마		
기정	소로	3	72	4	산책로	255	1,020	번지점프장 1-10	소2-5	특수도로	테마		
기정	소로	3	73	2	산책로	70	140	소1-5	울산안전 체험관 1-4	특수도로	테마		
기정	소로	3	76	6	산책로	186	747	소1-13	소1-13	일반도로	타워		
기정	소로	3	77	6	연결로	109	848	호텔3-6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타워		
기정	소계				32개노선	4,918	14,476						

Ⅳ. 관계도면 및 편입토지조서

1.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북구 관광진흥과 비치)
2. 편입토지조서 :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염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사업
   나. 명칭 : 염포동 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2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등급	등급			연 장(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1	98	10	342	
소로	1	102	10	420	
소로	1	103	10	87	
소로	3	273	6	87	
소로	3	220	6	154	

나. 소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조성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108	소공원	북구 염포동 42일원	2,289.0	
기정	7	사회복지시설	북구 염포동 44-4일원	969.0	
기정	40	공공공지	북구 염포동 20일원	2,46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이승훈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5. 사업기간 :

당초 : 2018. 6. 28. ~ 2022. 08. 31.

변경 : 2018. 6. 28. ~ 2022.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염포동	20-2	대	127.0	127.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2	염포동	20-3	대	109.0	109.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3	염포동	20-4	대	1.0	1.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4	염포동	23	대	187.0	187.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5	염포동	39	전	87.0	87.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6	염포동	40	대	201.0	201.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7	염포동	41	전	236.0	236.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8	염포동	42	전	156.0	156.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9	염포동	42-1	전	282.0	282.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10	염포동	43	전	19.0	19.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11	염포동	43-1	전	144.0	144.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12	염포동	43-4	전	17.0	17.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13	염포동	43-7	전	239.0	239.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14	염포동	43-8	전	2.0	2.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15	염포동	43-2	전	33.0	33.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16	염포동	44-3	전	9.0	9.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17	염포동	44-6	전	62.0	62.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18	염포동	44-4	전	8.0	8.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19	염포동	47-4	전	309.0	309.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20	염포동	47-5	전	41.0	41.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21	염포동	48-6	전	522.0	522.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22	염포동	48-7	전	32.0	32.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23	염포동	48-8	전	4.0	4.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4	염포동	48-14	전	363.0	363.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25	염포동	961-20	천	17.0	17.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26	염포동	961-21	천	55.0	55.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27	염포동	961-46	천	35.0	35.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28	염포동	963-3	대	43.0	43.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29	염포동	963-16	대	29.0	29.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30	염포동	963-17	대	1.0	1.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31	염포동	44-5	천	52.0	52.0	박원선	울산시 서동 523				변 경 없 음
32	염포동	44-7	천	1.0	1.0	박원선	울산시 서동 523				변 경 없 음
33	염포동	48-5	임	707.0	707.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34	염포동	48-13	임	20.0	20.0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35	염포동	48-10	전	12.0	12.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36	염포동	961-23	천	1,540.0	1,540.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37	염포동	961-47	천	54.0	5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38	양정동	517-3	대	549.0	549.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39	양정동	517-5	대	10.0	10.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40	양정동	517-6	대	16.0	16.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41	양정동	519-1	대	44.0	4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42	양정동	523-25	대	212.0	212.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43	양정동	523-27	대	144.0	14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44	양정동	523-28	대	872.0	872.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45	양정동	556-31	임	488.0	488.0	김정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118동 106호	김상근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132동 1102호	근저당권	변 경 없 음
								안병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1, 222동 1004호	근저당권	
								박재영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21번길 58,502호	근저당권	
								김종임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1, 211동 704호	근저당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3)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6	양정동	746-1	대	120.0	120.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47	양정동	523-30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48	양정동	556-28	임	29.0	2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49	양정동	556-33	임	79.0	7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50	양정동	556-29	임	109.0	10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없 음
51	양정동	771-10	구	764.0	76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52	양정동	771-13	구	15.0	15.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53	양정동	771-17	구	646.0	646.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54	양정동	771-12	구	10.0	10.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55	양정동	771-2	천	178.0	178.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56	양정동	771-14	천	32.0	32.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57	양정동	771-3	천	103.0	103.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58	양정동	771-4	구	6.0	6.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59	양정동	771-5	구	24.0	2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60	양정동	771-15	구	1.0	1.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61	양정동	771-6	구	44.0	4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62	양정동	771-7	구	48.0	48.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63	양정동	771-18	구	156.0	156.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64	양정동	771-19	구	126.0	126.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65	양정동	771-8	구	20.0	20.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66	양정동	771-16	구	88.0	88.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4)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7	양정동	772-1	천	3.0	3.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68	양정동	772-6	천	34.0	3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69	양정동	772-8	천	24.0	2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70	양정동	773-28	도	422.0	422.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71	양정동	773-29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72	양정동	773-30	도	29.0	29.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73	양정동	773-19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74	양정동	773-20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75	양정동	773-32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76	염포동	47-6	천	39.0	39.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77	염포동	47-7	천	43.0	43.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78	염포동	48-9	천	64.0	6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79	염포동	48-16	천	4.0	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80	염포동	48-11	천	14.0	1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81	염포동	48-12	천	1.0	1.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82	염포동	48-17	천	70.0	70.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83	염포동	961-18	잡	76.0	76.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84	염포동	961-44	잡	30.0	30.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85	염포동	961-29	천	104.0	10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86	염포동	961-48	천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87	염포동	961-31	천	176.0	176.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88	염포동	961-52	천	84.0	8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89	염포동	961-32	천	340.0	340.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5)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90	염포동	961-33	천	1,096.0	1,096.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91	염포동	961-34	천	150.0	150.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92	염포동	961-59	천	316.0	316.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93	염포동	961-36	천	445.0	445.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94	염포동	961-53	천	28.0	28.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95	염포동	961-54	천	197.0	197.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96	염포동	961-37	천	1,034.0	1,03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97	염포동	961-38	천	13.0	13.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98	염포동	961-55	천	11.0	11.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99	염포동	961-56	천	1,042.0	1,042.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00	염포동	961-39	천	192.0	192.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01	염포동	961-49	천	6.0	6.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02	염포동	961-40	천	140.0	140.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03	염포동	961-57	천	4.0	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04	염포동	961-42	천	17.0	17.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05	염포동	961-58	천	5.0	5.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06	염포동	961-51	구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07	염포동	963-2	잡	1.0	1.0	국 (기획재정부)					변 경 없 음
108	염포동	963-15	잡	25.0	25.0	국 (기획재정부)					변 경 없 음
109	염포동	963-19	잡	2.0	2.0	국 (기획재정부)					변 경 없 음
110	염포동	963-11	잡	174.0	174.0	국 (기획재정부)					변 경 없 음
111	염포동	963-12	잡	22.0	22.0	국 (기획재정부)					변 경 없 음
112	염포동	963-18	잡	1.0	1.0	국 (기획재정부)					변 경 없 음
113	염포동	963-14	잡	342.0	342.0	국 (기획재정부)					변 경 없 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6)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14	염포동	964-1	도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15	염포동	964-3	도	32.0	32.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16	염포동	965-1	도	75.0	75.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17	염포동	965-3	도	66.0	66.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18	염포동	965-5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119	염포동	965-6	도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합 계				17,806	17,80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200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 : 1건**

지번주소	종전도로명주소	변경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무룡동 351-24	달곡1길 50-8	달곡1길 50-5	2022. 8. 25.	주소사용편의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 (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8.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20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천 제방 설치공사'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사명: 금천 제방 설치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94번지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제방붕괴에 따른 농경지와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바 홍수 방어 대책 및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하고자 함
   나. 개요: 하천제방 설치(L=168m, H=2.5~2.9m) 등
4.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2. 8. ~ 2022. 12.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그 세목조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물권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조서(별첨 참조)
7.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전 체	연차별 투자 계획(백만원)			비 고
		기투자	2022년	2022년 이후	
총사업비	470	470	470	-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13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제1항제1호)

2)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요재산’의 기준 신설
(안 제11조제4항)

3) 용어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5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제4항제1호)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 ‘실경작자’ → ‘농업인’

4) 인용조항 정비(안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

5)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11조, 제12조)

나.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1)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20조의2)

- 로컬푸드 품목 전시·판매를 위한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제기구 등이 행정재산을 사무소로 사용하려는 경우
-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신설(안 제6조제1항)

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1)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배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별표 제1호마목)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층 회계담당관(연암동, 북구청)

2) 전화번호 : 052-241-7312

3) 팩스번호 : 052-241-868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한다.

제5조 중 “그”를 “이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고 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황)”을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북구 의회”를 “북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2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로컬푸드 품목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 중에서 구 소유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청사의 공유재산을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한다.

별표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구성은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제10조의3----------. 다만, ----------.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
2.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1. ---------- 제5호까지----------
2.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 -- 이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고 그 --.
제6조(공유재산의 증감과 현황) <신 설>	제6조(공유재산의 증감과 현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관리계획---------- ---------- 북구의회 ----------. 공유재산관리계획 ----------.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공유재산관리계획-- ----------. -------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 ---------- --------.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 --. ---------- ----------.
<신 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

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②(생 략)	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②(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무상사용허가대상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이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사용허가----------.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수익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허가하여서는 안된다.
1.·2.(생 략)	1.·2.(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 사용허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로컬푸드 품목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 중에

	서 구 소유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청사의 공유재산을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사용허가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면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면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사용허가----------.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허가----------

대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사용허가----------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 ---------- -.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 ------ 농업인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별표]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제46조 관련)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제46조 관련)
1. 구본청 및 동청사	1. 구본청 및 동청사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 6. (생 략)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 9. (생 략)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④ (생 략)

제20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생 략)

③ ~ ⑤ (생 략)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 ⑥ (생략)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

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4.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목개정 2022. 4. 20.]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0.>

1. ~ 7. (생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 17. (생략)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 23. (생 략)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 ⑥ (생 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 28. (생 략)

② ~ ⑧ (생 략)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 ④ (생 략)

□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농어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농어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13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안 별지 제23호의2(1))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층 회계담당관(연암동, 북구청)

2) 전화번호 : 052-241-7312

3) 팩스번호 : 052-241-868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별지 제23호의2(1)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별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지 제23호의2(1)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부과내용

재산의표시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예상](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23호의2(1)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부과내용

재산의표시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예상](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귀하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 6. (생 략)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 9.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계획 재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약정기간이 2022.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고하였으나,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금고의 수 : 1개의 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 약정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4.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우리 구 관내에 영업점(지점)을 둔 금융기관

5. 금고의 주요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금고 지정 계획 공고 및 관련서류 열람

○ 공고 및 열람 기간 : 2022. 8. 25.(목) ~ 9. 2(금)

○ 공고장소 :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관련서류 열람

•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징수담당관(1층, ☏052-241-7501)

• 서 류 :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금고 관련 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 등

7. 금고 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2. 9. 2.(화) ※ 단, 근무시간내(09:00~18:00)

○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징수담당관(1층)

○ 부 수 : 신청서 1부,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요약서 12부 별도 제출

○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신청서

•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제안서 및 부속서류 등

○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8.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기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7점)

※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 붙임(별표1,별표2) 참조

9. 심의 및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 함

○ 서류심사 이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심사를 병행할 수 있음(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금고를 지정함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2개 이상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할 경우 총점과 순 위를 공개함

10.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신·구 금고 간 금고 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 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인수토록 함

○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 1. 1.부터 정상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운영 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금고은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금고 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11.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따른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부담으로 함

○ 금고운용을 위한 세입 및 자금배정시스템, 수납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담

12.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구 금고지정 신청안내서(금융기관별 1개 지점에 별도 통지)에 따라 작성하되, 심사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 별로 색인표 부착 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

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 보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확인 후 봉인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사용인감(도장)과 인감확인서 지참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

○ 제안서 등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위 내에서 공개 할 수 있으며,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별표1)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라.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3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5점) 나. 구 와의 협력사업계획 ---------- (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별표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0점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처리 가능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금고관리 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OCR 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 OCR 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능력 평가 후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158호

도시관리계획(율동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율동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안 및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02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218,536.2	-	218,536.2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18,536.2	-	218,536.2	100.0	
주거지역	소 계		184,856.2	-	184,856.2	84.6	
	주 거 지 역		175,176.2	-	175,176.2	80.2	
		제1종일반주거지역	32,631.0	-	32,631.0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9.0	-	20,069.0	9.2	
		제3종일반주거지역	122,476.2	-	122,476.2	56.0	
	준주거지역		9,680.0	-	9,680.0	4.4	
녹지지역	소 계		33,680.0	-	33,680.0	15.4	
	자연녹지지역		33,680.0	-	33,680.0	15.4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7	3,745	47,470.3	11	1,310	18,840.8	12	2,200	20,227.2	4	235	4,581.9
일반도로	계	27	3,745	43,649.9	11	1,310	18,840.8	12	2,200	20,227.2	4	235	4,581.9
	대 로	3	925	6,692.4	-	-	-	2	787	2,949.7	1	138	3,742.7
	중 로	7	1,205	21,735.8	1	454	9,758.0	4	714	11,493.6	2	37	484.2
	소 로	17	1,615	15,221.7	10	856	9,082.8	6	699	5,783.9	1	60	355.0
가각 및 기타		-	-	3,820.4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 (33.5)	보조 간선도로	7,741 (519)	3호광장	12호광장	일반도로	4호 광장		염포로
기정	대로	2	21	30~50 (39)	주간선 도로	13,229 (268)	대2-1	대3-85	일반도로	효문 공단	'98.5.11.	오토 밸리로
기정	대로	3	120	25	집산도로	138	중로2-521	대로2-1	일반도로		'15.07.29.	
기정	중로	1	330	20~25	집산도로	454	대로3-120	소로3-보81	일반도로		'15.07.29.	
기정	중로	2	518	18~25	집산도로	139	중로1-330	대로2-21	일반도로		'15.07.29.	
기정	중로	2	519	15	집산도로	182	소로1-134	중로1-330	일반도로		'15.07.29.	
기정	중로	2	520	15	집산도로	266	중로2-521	증로2-519	일반도로		'15.07.29.	
기정	중로	2	521	15	집산도로	127	중로2-520	대로3-120	일반도로		'15.07.29.	
기정	중로	3	395	13	집산도로	17	중로1-330	소로1-135	일반도로		'15.07.29.	
기정	중로	3	396	13	집산도로	20	소로1-136	대로3-120	일반도로		'15.07.29.	
기정	소로	1	134	10	집산도로	170	효문동23-2	중로2-519	일반도로		'15.07.29.	
기정	소로	1	135	10	집산도로	272	소로1-보10	소로1-보9	일반도로		'15.07.29.	
기정	소로	1	136	10	집산도로	215	소로2-633	소로1-보14	일반도로		'15.07.29.	
기정	소로	1	보9	10	집산도로	11	소로1-135	대로2-1	보행자 도로		'15.07.29.	
기정	소로	1	보10	10	집산도로	11	소로1-135	대로2-1	보행자 도로		'15.07.29.	
기정	소로	1	보11	10	집산도로	16	대로3-120	소로1-135	보행자 도로		'15.07.29.	
기정	소로	1	보12	10	집산도로	17	중로1-330	소로1-135	보행자 도로		'15.07.29.	
기정	소로	1	보13	10	집산도로	18	소로1-136	대로3-120	보행자 도로		'15.07.29.	
기정	소로	1	보14	10	집산도로	12	소로1-136	대로2-1	보행자 도로		'15.07.29.	
기정	소로	1	143	10	집산도로	114	중로2-519	효문동 산30	일반도로		'15.07.29.	
기정	소로	2	628	8	집산도로	99	소로3-268	중로2-520	일반도로		'15.07.29.	
기정	소로	2	629	8	집산도로	83	소로1-135	소로2-630	일반도로		'15.07.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630	8	집산도로	70	소로1-135	소로1-135	일반도로		'15.07.29.	
기정	소로	2	631	8	집산도로	99	소로1-136	소로2-633	일반도로		'15.07.29.	
기정	소로	2	632	8	집산도로	66	소로2-633	소로2-633	일도로		'15.07.29.	
기정	소로	2	633	8	집산도로	282	소로1-136	소로1-136	일반도로		'15.07.29.	
기정	소로	3	보81	6	집산도로	60	중로1-330	효문동 산33-1	보행자도로		'15.07.29.	
변경	소로	3	보81	6	집산도로	60	중로1-330	효문동 산33-1	보행자 우선도로		'15.07.29.	

※ ( )는 지구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보81	소로3-보81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열공급설비의 관리 및 비상차량 출입을 위해 차량 및 보행자의 혼용이 가능한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261	주차장	북구 양정동 818-2	1,000.1	'15.07.29.	노외주차장
기정	262	주차장	북구 양정동 809-3	597.0	'15.07.29.	노외주차장
기정	263	주차장	북구 양정동 815-6	596.2	'15.07.29.	노외주차장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63	율동 제1공원	근린공원	북구 양정동 819-1 일원	20,171.0	'15.07.29	저류지 중복 (2,528.7㎡)
기정	96	율동 제2공원	소공원	북구 양정동 809-2	1,224.1	'15.07.29	-

(2)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568	녹지	완충녹지	북구 효문동 1053 일원	2,656.8	'15.07.29.	
기정	569	녹지	완충녹지	북구 효문동 1071	1,275.4	'15.07.29.	
기정	570	녹지	완충녹지	북구 양정동 853	784.1	'15.07.29.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568	녹지	완충녹지	북구 효문동 1053 일원	2,656.8	'15.07.29.	
기정	569	녹지	완충녹지	북구 효문동 1071	1,275.4	'15.07.29.	
기정	570	녹지	완충녹지	북구 양정동 853	784.1	'15.07.29.	
기정	571	녹지	완충녹지	북구 양정동 852	2,625.2	'15.07.29.	
기정	572	녹지	경관녹지	북구 효문동 1058	767.1	'15.07.29.	
기정	573	녹지	경관녹지	북구 효문동 1060	2,379.2	'15.07.29.	
기정	574	녹지	경관녹지	북구 양정동 848	645.1	'15.07.29.	
기정	575	녹지	경관녹지	북구 양정동 850 일원	739.0	'15.07.29.	
기정	576	녹지	경관녹지	북구 양정동 851	235.1	'15.07.29.	

(3)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60	광장	교통광장(교차점)	북구 효문동 1051	225.8	'19.12.24.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열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열공급설비	북구 효문동 1055	908.0	'21.08.11.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330	학교	초등학교	북구 효문동 1062	11,000.0	'15.07.29.	

(2)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2	사회복지시설	북구 양정동 820	1,206.6	'15.07.29.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폭원(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57	하천	소하천	북구 양정동 18-4 일원	북구 효문동 35-23일원	근린공원 163	0.57	15	8,567.0	'15.07.29.	

(2) 유수지(저류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66	유수지	저류시설	북구 양정동 847	2,528.7	'15.07.29.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9	오수펌프장	북구 양정동 821	280.1	'16.03.16.	

3)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계	-	13,049.0	-	-	13,020.4	-
기정	-	단독1	2,590.0	1	북구 양정동 808-1	264.9	획지분할 · 합병불허
기정				2	북구 양정동 808-2	262.1	
기정				3	북구 양정동 808-3	260.8	
기정				4	북구 양정동 808-4	260.3	
기정				5	북구 양정동 808-5	260.6	
기정				6	북구 양정동 808-6	246.3	
기정				7	북구 양정동 808-7	260.7	
기정				8	북구 양정동 808-8	261.7	
기정				9	북구 양정동 808-9	260.9	
기정				10	북구 양정동 808-10	251.7	
기정	-	단독2	700.9	1	북구 양정동 809-1	356.0	획지분할 · 합병불허
기정				2	북구 양정동 809-4	344.9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	단독3	2,999.9	1	북구 양정동 815-1	298.1	획지분할 · 합병불허
기정				2	북구 양정동 815-2	301.4	
기정				3	북구 양정동 815-3	301.4	
기정				4	북구 양정동 815-4	301.2	
기정				5	북구 양정동 815-5	301.2	
기정				6	북구 양정동 815-7	301.1	
기정				7	북구 양정동 815-8	301.3	
기정				8	북구 양정동 815-9	301.3	
기정				9	북구 양정동 815-10	301.4	
기정				10	북구 양정동 815-11	291.5	
기정	-	단독4	2,772.1	1	북구 양정동 816-1	308.5	획지분할 · 합병불허
기정				2	북구 양정동 816-2	311.3	
기정				3	북구 양정동 816-3	311.4	
기정				4	북구 양정동 816-4	311.4	
기정				5	북구 양정동 816-5	312.3	
기정				6	북구 양정동 816-6	292.4	
기정				7	북구 양정동 816-7	311.2	
기정				8	북구 양정동 816-8	311.4	
기정				9	북구 양정동 816-9	302.2	
기정	-	단독5	2,844.4	1	북구 양정동 817-1	346.6	획지분할 · 합병불허
기정				2	북구 양정동 817-2	346.8	
기정				3	북구 양정동 817-3	347.9	
기정				4	북구 양정동 817-4	349.9	
기정				5	북구 양정동 817-8	350.8	
기정				6	북구 양정동 817-7	366.9	
기정				7	북구 양정동 817-5	419.6	
기정				8	북구 양정동 817-6	315.9	
기정	-	단독6	1,113.1	1	북구 양정동 810-4	278.1	획지분할 · 합병불허
기정				2	북구 양정동 810-3	278.0	
기정				3	북구 양정동 810-2	278.1	
기정				4	북구 양정동 810-1	278.9	

나) 공동주택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계	-	96,113.6	-	-	96,113.6	-
기정	-	A1, A2, B1, B2, C1, C2,	96,113.6	A1	북구 효문동 1054	11,813.4	국민임대
기정				A2	북구 효문동 1057	15,482.0	10년임대
기정				B1	북구 효문동 1064	12,210.0	일반분양
기정				B2	북구 양정동 819-2	22,451.9	일반분양
기정				C1	북구 양정동 819-3	13,000.2	공공분양
기정				C2	북구 양정동 818-3	21,156.1	일반분양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계	-	3,867.3	-	-	3,867.3	-
기정	-	근생1	947.4	1	북구 양정동 811-1	315.9	획지분할 불가 2개의 획지 합병허용
기정				2	북구 양정동 811-2	315.7	
기정				3	북구 양정동 811-3	315.8	
기정	-	근생2	890.2	1	북구 양정동 812-1	284.8	획지분할 불가 2개의 획지 합병허용
기정				2	북구 양정동 812-2	284.9	
기정				3	북구 양정동 812-3	320.5	
기정	-	근생4	1,021.3	1	북구 양정동 813-1	340.4	획지분할 불가 2개의 획지 합병허용
기정				2	북구 양정동 813-2	340.5	
기정				3	북구 양정동 813-3	340.4	
기정	-	근생5	1,008.4	1	북구 양정동 814-1	336.2	획지분할 불가 2개의 획지 합병허용
기정				2	북구 양정동 814-2	336.1	
기정				3	북구 양정동 814-3	336.1	

라) 교육시설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계	-	11,000.0	-	-	11,000.0	
기정	-	초	11,000.0	-	북구 효문동 1062	11,000.0	

마) 사회복지시설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계	-	1,206.6	-	-	1,206.6	
기정	-	사복	1,206.6	-	북구 양정동 820	1,206.6	

바) 주차장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계	-	2,193.3	-	-	2,193.3	
기정	-	주1	1,000.1	1	북구 양정동 818-2	1,000.1	
기정	-	주2	597.0	2	북구 양정동 809-3	597.0	
기정	-	주3	596.2	3	북구 양정동 815-6	596.2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단독 1~6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단,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40% 이내에서 지상 1층에만 설치가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단독주택 건축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방향을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적용한다.
		형 태		• 지붕형태는 주위의 경관에 어울리게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색 채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한다.)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건축선		-

나)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 A1,2, B1,2, C1,2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 이		• 최고높이 60m(20층)
		배 치		• 주동은 도로 또는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건축선 폭원 이상 이격하여 배치되도록 한다. •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의 이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별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 내에 적정 배치토록 한다. • 바람길, 통경축 확보 - 바람길 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한다.
		형 태		• 지붕, 옥탑 등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 필로티 -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주동의 지상층에 필로티 설치시 적절한 유효높이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며, 난색계열의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건축선		• 대지내에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 공공주택 공급정책에 부합하고 저렴한 분양가 책정으로 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설정하고 같은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구분	획지 번호	주택유형	면 적 (㎡)	세대수 (호)	평균주택 규모(㎡)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 (높이)	비 고
계	-	-	96,113.6	2,397	-	-	-		
공동 주택	A1	60㎡이하	11,813.4	437	60	50	220	20층 (60m)	국민임대
	A2	60㎡이하	15,482.0	454	75	50	220	20층 (60m)	10년임대
	B1	60초과~ 85㎡이하	12,210.0	256	105	50	220	20층 (60m)	일반분양
	B2	60초과~ 85㎡이하	20,451.9	429	105	50	220	20층 (60m)	일반분양
		85㎡초과	2,000.0	31	140				
	C1	60㎡이하	13,000.2	358	80	50	220	20층 (60m)	공공분양
	C2	60초과~ 85㎡이하	19,156.1	401	105	50	220	20층 (60m)	일반분양
		85㎡초과	2,000.0	31	140				

※ 평균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으로서 해당 획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다)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근생 1,2,4,5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쪽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형태는 근린생활시설인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단,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선		-

라)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초등학교	용도	허용용도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유치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학원 제외)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 미만 범위 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배 치		•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가급적 장축방향으로 배치하고,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형 태		•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도모한다.
		색 채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축선		-

마) 사회복지시설(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사회복지시설	용도	허용용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형 태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선		-

바)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
(가구번호)</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9">-</td><td rowspan="9">주차장</td><td rowspan="2">용도</td><td>허용
용도</td><td colspan="2">•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13호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 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해당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상 허용범위 내 건축물 설치</td></tr>
<tr><td>불허
용도</td><td colspan="2">• 허용용도이외의 용도</td></tr>
<tr><td colspan="2">도면표시</td><td>• 주1</td><td>• 주2, 주3</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20% 이하</td><td>• 6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100% 이하</td><td>• 150% 이하</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배 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형 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건축선</td><td colspan="2">-</td></tr>
</table>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
(획지번호)</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2">-</td><td>A1, A2, B1, B2, C1, C2,</td><td>대지내 공지</td><td>•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을 권장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 대지경계변에 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td></tr>
<tr><td>-</td><td>차량출입
불허구간</td><td>• 교차로 및 가각부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성을 확보한다.</td></tr>
</table>

2. 열람기간: 2022. 8. 25.~2022. 9. 8.(공고 익일로부터 14일 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3)

4.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159호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안 및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4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염포동 20-1번지 일원	42,953.5	증 2,452.5	45,406.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4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증 2,452.5㎡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2,953.5	증 2,452.5	45,406.0	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42,953.5	-	42,953.5	94.6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452.5	2,452.5	5.4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6	716	6,078.3	3	475	4,942.8	-	-	-	3	241	1,135.5
변경		6	942	7,418.3	3	475	4,942.8	-	-	-	3	467	2,475.5
기정	소로	6	716	6,078.3	3	475	4,942.8	-	-	-	3	241	1,135.5
변경	소로	6	942	7,418.3	3	475	4,942.8	-	-	-	3	467	2,475.5

주)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98	10	국지 도로	342 (2)	중2-40	소3-220	일반 도로	양정 일원	'76.4.9 경고62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1	102	10	국지 도로	420 (420)	소로1-98	염포동 961-29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1.3.3 울(북)고19호	
기정	소로	1	103	10	국지 도로	87 (53)	소로1-98	소로3-273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1.3.3 울(북)고19호	( ) : 구역내 폭원6m편입
기정	소로	3	273	6	국지 도로	87 (87)	소로1-103	염포동 961-18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7.8.24 울(북)고154호	( ) : 구역내 폭원2m편입
기정	소로	3	220	6	국지 도로	154 (154)	소1-98	소3-221	일반 도로	심천 지구	'76.4.9 경고62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80	소1-99	소1-101	일반 도로	양정 일원	'76.4.9 경고62호	'20.7.1 울(북)고122호
변경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306 (226)	소3-220	소1-101	일반 도로	양정 일원	'76.4.9 경고62호	노선연장

주) ( )은 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221	소로3-221	• 노선연장 (B=6m, L=80m→306m)	• 지구단위계획구역 조건사항에 따라 구역 외 도로의 개설 및 기부채납을 위해 일몰된 소로3-221호선을 일몰 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변경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0	공공공지	북구 염포동 961-33일대	2,456.6	-	2,456.6	'06.4.13 울고 91호	'19.02.14 울(북)고 27호

(2)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8	-	소공원	북구 염포동 691-55일대	2,292.5	-	2,292.5	'17.8.24 울(북)고154호	'19.02.14 울(북)고 27호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	사회복지 시설	북구 염포동 48-6일대	975.6	-	975.6	'11.3.3 울(북)고 19호	'19.02.14 울(북)고 27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37,987.7	-	37,987.7	-	-	-	-
기정	-	1B	1,303.0	-	1,303.0	1	1B-1	936.0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건축물
기정						2	1B-2	367.0	하천구역
기정	-	2B	32,482.3	-	32,482.3	1	2B-1	29,343.2	공동주택 (공개공지 559㎡포함)
기정						2	2B-2	975.6	기반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
기정						3	2B-3	44.2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4	2B-4	1,308.7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5	2B-5	535.4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6	2B-6	275.2	하천구역
기정	-	3B	4,202.4	-	4,202.4	1	3B-1	539.4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2	3B-2	106.8	하천구역
기정						3	3B-3	31.2	하천구역
기정						4	3B-4	216.9	하천구역
기정						5	3B-5	986.7	하천구역
기정						6	3B-6	28.9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7	3B-7	2,292.5	소공원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	1B-1	허용용도		A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20m(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	2B-1	허용용도		B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20m(-) 이하	층수는 관련법령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	2B-2	허용용도		C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20m(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건축물의 용도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주거용지(A)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주택용지(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사회복지시설(C)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공개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면적(㎡)	비고
기정	-	2B-1	공개공지	302	• 오픈스페이스 및 주민들의 편의공간 등을 위한 공개공지
기정	-	2B-1	공개공지	257	

나) 기타 조건사항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1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외 도로 등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도로, 소공원, 공공공지, 하천)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시공 및 기부채납 할 것	'17.8.24 울(북)고154호

2. 열람기간: 2022. 8. 25.~2022. 9. 8.(공고 익일로부터 14일 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3)
4.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16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안 제8조, 제9조)

라.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안 제10조)

마.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11조)

3. 근거법령

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제4조의3

나. 「근로기준법」제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94,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정이유

○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안 제8조, 제9조)
라.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안 제10조)
마.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11조)

3. 관계법령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
나. 「근로기준법」 제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8월중(예정)
바. 입법예고 : 2022. 8. 25. ~ 9. 14. 실시(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사업장 또는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지킴이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지역에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16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2. 6. 22.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제3조, 제7조)

나. 급식지원 대상자 범위 정비(안 제2조)

다. 위촉위원 임기 변경(안 제10조) : 2년 → 3년

라. 상위법령 현행화(안 제16조)

- (당초)「지방재정법」제32조의5, 제32조의8
- (변경)「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0조제1항

마. 서식(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정비(안 별지 서식)

3.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0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14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1) 전자우편 : family1@korea.kr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가족정책과

3) 팩　　스 : 052-241-767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하고, “아동”을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호대상자인”을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제2조제5호 중 “가출, 장기복역”을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으로 하고, “보호자가 없는”을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

호 및 제8호로 한다.

6.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3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영 제36조제1항”을 “영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36조제4항”을 “영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5”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2 . ---------- --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보호자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삭 제>
8. · 9.(생 략)	7. · 8.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제3조(급식지원 방법) ---------- ---------- --------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 ---------- ---------- ---------- ---------- ---------- ---------- -----.
② · ③(생 략)	② · ③(현행과 같음)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공적자료 확인	1. ---------- 제7호----------
2.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2. 제2조제8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 3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행	② ----------

상황 점검 등을 한 결과, 급식업체가「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

<별지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___)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 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삭제 <2021. 1. 12.>

제32조의8 삭제 <2021. 1. 1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 2022-116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2년 7월 22일, 제2022-1040호로 불법 경작물을 2022년 8월8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북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2년 9월 8일	건설과	시설6급	노선화	550,000원 이내

2022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제 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건설과

직위(직급): 시설6급

성 명: 노선화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사람은 2022년 8월 24일, 제2022-1167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1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관하는 울산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명칭,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복지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마.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 정 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2) 전화번호 : 052)241-7672, 팩스번호 : 052)241-7669

3) 전자우편(E-mail) : sodami19@korea.kr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64-4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

다.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 전액 면제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전액 면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20 경감
4. 다자녀 카드 소지자 : 100분의 20 경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100분의 20 경감

③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 등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0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 후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사용료	다목적홀	2시간/1회 (평일기준)	30,000원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요금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교육장		25,000원	
	다목적실		20,000원	
이용료	재활치료 (음악·언어·미술·물리치료 등)	40분/회	7,000원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제6조 관련)

구분	반환금액
○ 1회 단위로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사용 및 이용 시간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 전액
○ 월 단위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월 단위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 ④ (생 략)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 12. 30.>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분야 관계 공무원

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8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
3. 위탁대상 사무
4. 위탁기간
5. 예산지원액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방안
7.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의 지휘·감독 결과, 제14조에 따른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제10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효율적인 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2. 비용추계 전제
   ○ 연도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및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적용
   ○ 인건비 : 매년 1.4%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 운영비 : 1~2차년도 대비 3~5차년도 10%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 보수 및 운영비 산정 내역서【붙임1】참조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2명 인건비 산출
   ○ 장애인복지관 예산 : 인건비(시 100%), 운영비(구 100%)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총비용(a-b)		-162,000	-162,000	-178,200	-178,200	-178,200	-858,600
세입	소계(a)	941,145	954,321	967,681	981,228	994,965	4,839,340
	시비보조금 (인건비)	941,145	954,321	967,681	981,228	994,965	4,839,340
세출	소계(b)	1,103,145	1,116,321	1,145,881	1,159,428	1,173,165	5,697,940
	시비보조금 (인건비)	941,145	954,321	967,681	981,228	994,965	4,839,340
	구비 (운영비)	162,000	162,000	178,200	178,200	178,200	858,600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7급 조진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제10조 관련)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합계		1,103,145	1,116,321	1,145,881	1,159,428	1,173,165	5,697,940
시비	일반회계	941,145	954,321	967,681	981,228	994,965	4,839,340
구비	일반회계	162,000	162,000	178,200	178,200	178,200	858,600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시비 및 구비확보 예정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7급 조진희(241-7692)

붙임 1

보수 산정 내역서

1.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2. 산정기준 : 연도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및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적용
   (2022년 인건비 지원금액 × 1.4%)

구 분		2023년 기준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941,145	
인건비	소 계	652,861	
	기본급	652,861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2명) - 관장(20호봉, 1명) : 4,704,700×12월 = 56,456,400원 - 사무국장(17호봉, 1명) : 4,228,700원×12월 = 50,744,400원 - 팀장(3급 10호봉, 5명) : 2,847,400원×12월×5명 = 170,844,000원 - 팀원(4급 3호봉, 13명) : 2,094,500원×12월×13명 = 326,742,000원 - 관리직(3호봉, 2명) : 2,003,100원×12월×2명 = 48,074,400원 (관리직 : 운전기사, 조리사)
수 당	소 계	139,300	
	가족수당	15,840	◦ 720,000원×22명 = 15,840,000원 ◦ 배우자, 자녀 1명 기준 - 배우자 40,000원×12월 = 480,000원 - 첫째자녀 20,000원×12월 = 240,000원
	명절휴가비	65,286	◦ 65,286,120원 (22명)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초과근무수당	47,614	◦ 47,614,060원 (22명) ◦ 월급여(통상임금)/209×1.5×10시간
	자격수당	10,560	◦ 480,000원×22명 = 10,560,000원
4대 보험료 등	소 계	148,984	
	4대 보험료	79,573	◦ 4대 보험료(22명) : 79,573,030원 ◦ 건강보험료율 3.495%, 고용보험료율 1.15% 산재보험료율 0.9%, 국민연금료율 4.5%
	요양급여	3,397	◦ 요양급여(22명) : 3,397,260원 ◦ 요양급여 12.27%
	퇴직적립금	66,014	◦ 퇴직적립금(22명) : 66,013,540원 ◦ (기본급+수당)/12

운영비 산정 내역서

1. 산정기준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등 적용

2. 산정내역

구 분	2023년 기준	
	금액(천원)	산출내역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62,000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 4,000,000원 ◦ 공공요금, 수용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 : 93,000,000원 ◦ 사업비 : 65,000,000원